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라남도 신안군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소속으로 신안경찰서를 신설하면서, 이에 필요한 인력 8명(총경 1명, 경정 1명, 경감 4명, 경위 1명, 경사 1명)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으로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·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 별첨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전라남도경찰청의 목포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“목포시, 신안군”을 “목포시”로 하고, 같은 란 구례경찰서 다음에 신안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신 안 경 찰 서	신 안 군 암 태 면 승봉로 11-3	신안군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별표 8의 전라남도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“구례경찰서”를 “구례·신안경찰서”로 한다.

별표 11의 전라남도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“구례경찰서”를 “구례·신안경찰서”로 한다.

별표 12의 전라남도경찰청의 3급지란 중 “구례경찰서”를 “구례·신안경찰서”로 한다.

별표 15 중 총계 “134,199”를 “134,207”로 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29,817”을 “129,825”로 하며, 총경 “579”를 “580”으로 하고, 경정 “2,914”를 “2,915”로 하며, 경감 “10,484”를 “10,488”로 하고, 경위 “17,064”를 “17,065”로 하며, 경사 “28,501”을 “28,502”로 한다.

별표 16 중 총계 “135,146”을 “135,154”로 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29,817”

을 “129,825”로 하며, 총경 “579”를 “580”으로 하고, 경정 “2,914”를 “2,915”로 하며, 경감 “10,484”를 “10,488”로 하고, 경위 “17,064”를 “17,065”로 하며, 경사 “28,501”을 “28,502”로 한다.

별표 18 제1호9) 조직란 중 “9) 자치경찰담당관”을 “9) 생활안전국 자치경찰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대비표

[별표 15]

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7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		•		•	•		
총계			<u>134,199</u>		<u>134,207</u>	+8	
경찰공무원	계		<u>129,817</u>		<u>129,825</u>	+8	
		•		•	•		
		•		•	•		
총경			<u>579</u>		<u>580</u>	+1	
경정			<u>2,914</u>		<u>2,915</u>	+1	
경감			<u>10,484</u>		<u>10,488</u>	+4	
경위			<u>17,064</u>		<u>17,065</u>	+1	
경사			<u>28,501</u>		<u>28,502</u>	+1	
		•		•	•		
		•		•	•		

[별표 16]

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7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135,146	135,154	+8
경찰공무원 계	129,817	129,825	+8
총경	579	580	+1
경정	2,914	2,915	+1
경감	10,484	10,488	+4
경위	17,064	17,065	+1
경사	28,501	28,502	+1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	
연 락 처	(02) 3150 - 1157